

징벌과 손해배상

글 · 전중호 대표이사 동림(주)

원료를 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도 원료를 제 때에 공급하지 않아 공장에서 작업을 할 수 없 다든가 아니면, 그 때문에 다른 거래처에서 보다 비싼 가격으로 원료를 구입하여 손해를 보았 거나 하는 일은 우리 주위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일이다.

또는 도로 옆에 있는 집에 트럭이 뛰어들어 가재를 파괴하는 등 이런 사건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당연히 손해를 가한자는 손해를 받은 자에 대하여 배상을 해야 한다. 이것이 손해배상(損害賠償)이다. 간단히 말해서 손해배상(compensation for damages)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남이 입은 손해를 메워 손해가 없는 것과 같은 상태로 회복 하는 일이다.

그러나 손해배상제도에는 실제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첫째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것은 어떤 경우인가? 둘째 어떤 경우에 손해가 배상되는가? 셋째 어떤 방법으로 손해가 배상되는가? 하는 점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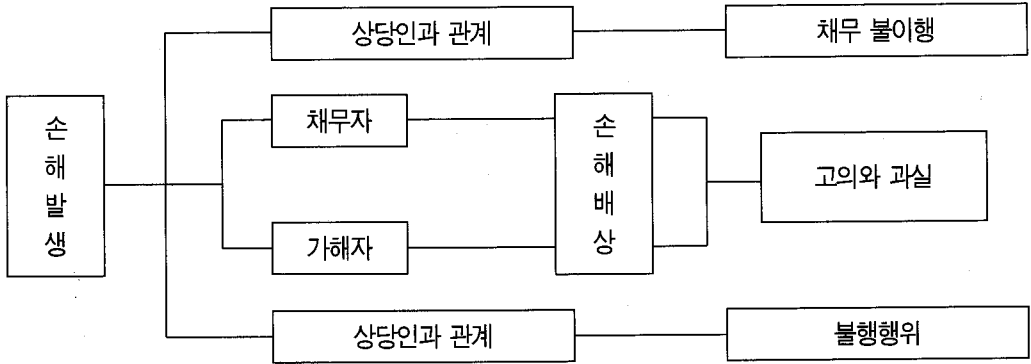
이것을 나누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최초로 열거한 것은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와 관련된

예이다. 이런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고의나 과실 등의 책임으로 돌아갈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손해를 배상한다.

이 두가지 경우가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가장 대표적이고 중요한 예로 그 밖에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이 인정되고 있는 경우가 있다. 또한 당사자 사이의 계약으로서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고 결정한 경우가 있다. 손해담보계약이나 손해보험도 같은 종류이다.

당사자 사이에 미리 특별한 약속을 하지 않는 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원인이 된 사실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한한다. 배상을 하는 것은 보통 재산적 손해이지만 정신적 손해도 배상을 한다. 배상의 방법에는 원상회복과 금전배상이 고려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민법은 후자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손해발생과 법률관계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징계(懲戒)라고 하는 것은 허물을 뉘우치도록 주의를 주고 나무람, 또는 부정이나 부당한



행위를 되풀이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가함을 말한다. 즉 제재(制裁)를 가하여 뉘우치도록 하는 것이다. 법률용어로서 가장 적절하게 말하면 특별한 신분관계내에서의 기율(紀律) 내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복무의무 위반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한 마디로 징계라고 말하려면 그 성질이나 신분관계 등에 의하여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전형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공무원 등의 징계일 것이다. 이것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들과 특별한 신분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제재를 과하는 경우이며, 이것을 우리는 징계라고 칭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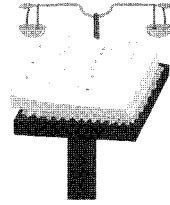
예컨대 국가공무원법, 법관징계법, 군인사법, 군무원인사법, 교육공무원법의 징계 등이 그 좋은 예이다. 다음은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호(監護)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친권자와 같이 특정한 자가 보호를 받는 자

등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자를 보호하고 교육하는 즉 필요상 제재를 과하는 경우에 징계라고 하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소년원법도 마찬가지이다. 또 선장이 선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키지 않는 해원(海員:seamen)에 대하여 일정한 제재를 과하는 경우에도 이것을 역시 징계라고 부르고 있다. 또 변호사가 변호사법 또는 소속 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에 위반할 경우 징계위원회가 일정한 제재를 과하는 경우에도 이것을 징계라고 부르고 있다.

아울러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경우에도 징계라고 하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즉 국회의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국회법의 징계에서 규정되고 있고, 지방의회의 의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의 징계에 규정되어 있다.

다음은 징계와 유사한 용어에 징벌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이것은 장래를 경계하기 위하여 벌을 부과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징



별은 사서적인 의미로는 '뒷일을 경계하는 뜻으로 별을 주는 것'인데, 법률에서는 장래에 부정 또는 부당한 행위를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포상(褒賞)과 대비된다.

징벌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한 입법례로서는 행정법 제46조가 '수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벌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징벌의 종류에는 경고, 1월 이내의 신문 및 도서열람의 제한, 2월 이내의 신청에 의한 작업의 정지, 작업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삭감, 2월 이내의 금치(禁治)가 있다. 이상과 유사한 입법례에는 군행형법 제44조 이하 제46조까지의 규정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중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懲罰的損害賠償: punitive damages)이란 손해배상에 있어서 가해자의 악의적 행위에 대한 처벌 성격으로서

발생하였다. 즉 똑같은 불법행위를 다시는 반복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추가해서 가하는 손해배상이다.

미국 판례에 의해 처음으로 대두되었으며 기존의 손해배상 외에 추가적으로 형벌적 성격의 손해배상을 부가하는 것으로 가해자 특히 거대기업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특별 조치이다.

우리나라에서도 2002년 7월부터 PL법이 발효되었다. 미국에서는 자주 거론되고 시행되고 있는 징벌적 배상이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적용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인 위자료(慰藉料)가 인정되고 있는 만큼 PL과 관련된 징벌적(punitory) 배상의 도입은 우리나라에서도 시간문제인 것 같다. 생명·신체·자유·명예·정조 등의 침해로부터 발생하는 손해의 배상인 것이 보통이다.

분쟁 조정위원회 위원 (추기명단)

전기제품 PL 상담센터

성명	직장	직위	주소	전화	분야
김만우	한국능률협회 컨설팅	전문 위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2 (CCMM B/D 8층)	3786-0671	전기제품 시험과 검사(화재감식)
김일산	한국무역협회	차장	광주 광산구 우산동 1589-1 (광주무역회관 2층)	062-942-9400	기업 경영
김호균	동의대학교 공대 산업공학과	교수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산 24	051-890-1655	PL법
이영수	경북대학교 경상학부 경제통상학부	교수	대구 북구 산격동 1370	053-950-5436	PL법
전관재	(주)텔리넷	대표이사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가곡리 247-1	031-594-4881 031-594-4882	기업경영 (설계와 제조)